

##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

議案番號	
------	--

提案年月日： 1980 . 12 . .

提 案 者： 經濟第2委員長

### 1. 提案經緯

가. 1980年12月23日 第13次 委員會에서 勞動關係法 改正 및 制定法律案을 委員會案으로 提案키로 하고 그 成案을 起草小委員會（趙英吉委員，李炳主委員，鄭漢株委員，韓基春委員，全達出委員）를 構成하여 委任함.

나. 1980年12月26日 第14次 委員會에서 勞動關係法改正案 起草小委員長（趙英吉委員）으로부터 勤勞基準法中 改正法律案의 成案에 대한 報告를 받고 小委員會의 草案을 上程하여 審查한 바 委員會案으로 採擇키로 議決함.

## 2. 提案理由

經濟事情의 变化에 對処하기 為하여 現実妥當性이 없는 事項의 改正과 勞使當事者의 共同利益을 図謀할 수 있는 事項等을 補完하여 事業場 勞務管理의 合理化를期하고 勤勞者 保護와 企業發展에 寄与코자함

## 3. 主要骨子

- 가. 하나의 事業내에 職種別로 退職金 支給率이 달라勤勞者間의 不滿要因이 되므로 差等制度를 둘수 없도록함. (案第 28 條 第 2 項)
- 나. 賃金債權의 保障을 為하여 現在 賃權・抵當權・租稅・公課金・賃金 順位로 되어 있는 것을 賃權・抵當權・賃金 順位로 上向 調整함 (案 第 30 條의 2 )
- 다. 都給事業의 경우 下受給人の 勤勞者賃金 保障을 為하여 直上受給人에게 連帶責任을 賦課토록함 (案 第 36 條의 2 )
- 라. 1 日 8 時間의 勤勞時間 硬直性을 緩和하기 為하여當事者 합意가 있는 때에는 週 48 時間單位로 運營할 수 있도록함 (案第 42 條 第 2 項)

마. 1日 7時間의 年少勤勞者 勤勞時間을 當事者 合意가  
있을때에는 8時間까지 可能토록함 (案第 55 條)

바. 賃金滯払에 對한 使用者의 責任感을 促求하기 為하여  
體刑을 科할 수 있도록함 (案第 109 條)

한국

法律 第 号

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(案)

勤勞基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 28 條에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② 第 1 項의 退職金 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內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.

第 30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0 條(金品清算) 使用者는 勤勞者가 死亡 또는 退職한 경우에 는 그 支給事由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日 以内에 賃金・補償金 기타一切의 金品을 支給하여야 한다. 다만, 特別한 事情이 있을 경우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延長할 수 있다.

第 30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0 條의 2(賃金債權 優先辨濟) 賃金・退職金・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產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担保된 債

權을 제외하고는 租稅·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. 다만, 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先하는 租稅·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33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3 條 (契約書類의 保存) 使用者は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 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第 36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 36 條의 2 (都給事業에 대한 賃金支給) ①事業이 数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인이 直上受給인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支給하지 못한 때에는 그直上受給人은 當該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.  
②第 1 項의 直上受給인의 歸責事由의 範囲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42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42 條 (勤勞時間) ①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1日에 8 時間, 1週日에 48 時間을 基準으로 한다.  
다만,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週日에 12 時間

限度로 延長 勤勞할 수 있다.

②使用者는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4週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特定日에 대하여 8時間, 特定週에 대하여 48時間을 초과하여 勤勞를 시킬 수 있다.

③使用者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廳長의 認可를 얻어 第1項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. 다만,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를 얻을 餘暇가 없을 경우에는 事後지체없이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④勞動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延長이 不適當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한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命할 수 있다.

第47條의 2중 "保健社會部長官" 을 "勞動廳長" 으로 한다.

第48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. 다만, 使用者の 彙責事由로 사

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다.

第 55 條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 日에 1 時間, 1 週日에 6 時間을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.

第 109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09 條 第 30 條 · 第 36 條 · 第 36 條의 2 · 第 51 條 · 第 58 條 또는 第 6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 年 이하의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第 110 條第 1 號중 “第 42 條第 1 項, 第 2 項” 을 “第 42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” 으로 하고 同條第 2 號중 “第 42 條第 3 項” 을 “第 42 條第 4 項” 으로 한다.

第 110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10 條의 2 第 37 條 또는 第 3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第 111 條第 1 號중 “第 42 條第 2 項但書” 를 “第 42 條第 3 項但書” 로 한다.

附 則

①(施行日)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 28 条第 2 項의 規定은 1981 年 4 月 1 日부터 施行한다.

②(經過措置) 使用者는 이法 施行當時의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이 第 28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背될 때에는 1981 年 3 月末日까지 이 法에 適合하도록 이를 變更하여 勞動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,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事業內의 最多數勤勞者에게 適用되는 退職金制度를 適用하는 것으로 본다.

한국

## 新旧条文对比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28 條 (退職金制度) 使 用者는 繼續 勤勞年數 1 年에 對하여 30 日 分以 上의 平均賃金을 退職 金으로서 退職하는 勤 勞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 야 한다. 다만, 勤勞年 数가 1 年未滿인 境遇 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 다.</p> <p>〈新設〉</p>	<p>第 28 條 (退職金制度) ① (左同)</p> <p>② 第 1 項의 退職金制度 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 나의 事業內에 差等制 度를 두어서는 아니된 다.</p>





하여 質權, 抵當權, 租  
稅·公課金을 제외하고는  
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 
辨濟받을 權利가 있다.

第33條(契約書類의 保存)  
使用者는 勤勞者  
名簿와 勤勞契約에 關  
한 重要한 書類를 3  
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〈新設〉

하여 質權 또는 抵當  
權에 의하여 担保된  
債權을 제외하고는 租  
稅·公課金 및 다른  
債權에 優先하여 辨濟  
되어야 한다. 다만,  
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先  
하는 租稅·公課金에 대하여  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33條(契約書類의 保存)…  
.....  
..... 大統領令으  
로 定하는 勤勞契約에 관  
한 중요한 書類를 3年  
間 保存하여야 한다.

第36條의 2(都給事業에  
대한 賃金支給) ①事  
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  
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 
에 下受給인이 直上受  
給人の 彙責事由로 勤



新設

## ②使用者는 當事者間의

合意가 있는 경우에는

4週間을 평균하여 1週

을 초과하지 아니하는

### 법위 내에서 特定目에 대

하여 8時間, 特定週에

## 대하여 48 時間을 초과하

## 여 勤勞를 시킬 수 있

다.

②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労動廳長의 認可를 얻어 第1項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. 다만,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를 얻을 餘暇가 없을 境遇에는 事後遲滯없이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### ③ 労動 庁 長 은 第 2 項 의 規

(3)使用者는 특별한 ... 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 언어

.....



며 第 44 條의 規定에 依 한 休憩時間 을 變更할 수 있다.	.....
1. 省略	.....
2. "	.....
3. "	.....
4. 其他 <u>保健社會部長官</u> 이 必要하다고 認定하 는 事業	4. 其他 <u>勞動廳長</u> 이 .....
第 48 條 (年次有給休暇) ① 使用者는 1 年間 皆勤한 労動者에 對하여는 8 일, 9 割以上 出勤한 者에 對하여는 3 日의 有給休 暇를 주어야 한다. ②使用者는 2 年以上 繼 續 勤勞한 劳動者에 對 하여는 1 年을 超過하는 連續勤勞年數 1 年에 對	第 48 條 (年次有給休暇) ①(左同)  ②(左同)

現 行	改 正 (案)
<p>하여 第 1 項의 休暇에 1 日을 加算한 有給休暇 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그 休暇 總日數가 20 日 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하는 日數에 對하여 는 通常賃金을 支給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使用者는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 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 야 하며 그 期間에 對 하여는 就業規則이나 其 他로 定하는 바에 依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 을 支給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勤勞者の 請求한</p>	<p>③( 左同 )</p>

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 
것이 事業運營에 甚大한  
支障이 있는 境遇에는  
그 時期를 變更할 수  
있다.

④勤勞者가 業務上의 負傷 또  
는 疾病으로 休業한 期間과 產  
前產後의 女子가 第60條의 規定  
에 依하여 休業한 期間은 第  
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  
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  
다.

<新設>

④(左同)

⑤第1項 및 第2項의

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  
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  
滅된다. 다만, 使用者의  
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  
한 경우에는 그려 하지  
아니하다.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55 條 (勤勞時間) 13 才 以上 18 才未滿者의 勤勞 時間은 1 日에 7 時間 1 週日에 42 時間을 超 過하지 못한다. 다만, 勤 動府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1 日에 2 時間 以內의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.</p>	<p>第 55 條 (勤勞時間) ..... ..... ..... ..... 다만, 當事者 間의 合意에 의하여 1 日에 1 時間, 1 週日에 6 時間을 限度로 延長 할 수 있다.</p>
<p>第 109 條 第 51 條, 第 58 條 또는 第 6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 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 萬원以下 의 罰金에 処한다.</p>	<p>第 109 條 第 30 條・第 36 條・ 第 36 條의 2, 第 51 條・第 58 條 또는 ..... ..... .....</p>
<p>第 110 條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2 年以下 의 懲役 또는 500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. 1. 第 9 條, 第 26 條第 1 項, 第 27 條第 1 項, 第 2 項,</p>	<p>第 110 條 ..... ..... ..... 1. ....</p>

第 27 條의 2 , 第 28 條 ,	.....
第 35 條 ; <u>第 42 條第 1 項 ,</u>	..... <u>第 42 條第 1 項</u> 4
<u>第 2 項 , 第 43 條 , 第 44</u>	<u>第 3 項 .</u> .....
條 , 第 50 條 , 第 55 條 ,	.....
第 56 條 , 第 57 條 , 第 60	.....
條 , 第 61 條 , 第 64 條第	.....
1 項 , 第 65 條 , 第 66 條 ,	.....
第 68 條 , 第 76 條 , 第 78	.....
條 , 第 79 條 , 第 80 條 ,	.....
第 82 條 , 第 83 條外 第	.....
105 條第 2 項에 違反한	.....
者 .	.....
2 . <u>第 42 條第 3 項 , 第 73</u>	2 . <u>第 42 條第 4 項</u> .....
條第 2 項 , 第 4 項의 規	.....
定에 의한 命令에 違	.....
反한 者 .	.....
3 . 省 略	3 . .....
第 110 條의 2 第 30 條 , '第	第 110 條의 2 第 37 條 至
36 條 , 第 37 條 및 第	는 第 38 條의 .....
38 條의 規定에 違反	.....



第 73 條第 1 項，第 74 條，	.....
第 75 條第 3 項，第 92 條，	.....
第 94 條，第 95 條；第 96	.....
條，第 99 條第 2 項，第	.....
100 條，第 101 條와 第	.....
104 條의 規定에 違反	.....
한 者.	.....



LAFCO